

제221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2020. 3. 12.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1974호
- 나. 제 출 자 : 백승권 의원
- 다. 제출일자 : 2020. 3. 2(월)
- 라. 회부일자 : 2020. 3. 2(월)

2. 제안이유

새마을장학금 지급 대상자가 무상교육의 확대 등으로 감소하고 있어 고등학생 및 대학생으로 확대 적용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목적’ 전문 개정(안 제1조)
- 나. ‘장학금의 지급대상’을 고등학생 및 대학생 자녀로,
1인 1자녀를 1인 2자녀까지로 확대(안 제3조)
- 다. ‘공납금 전액’을 수업료로 한정한다로 규정(안 제7조)
- 라. 그 밖에 어문 규범에 따른 띄어쓰기 등 정비

4. 관계법령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5. 검토의견

가. 개정이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등학교 무상 의무교육 확대 실시로 지급대상자가 감소하고 있어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대학생까지 및 대상 자녀수도 1인 1자녀에서 1인 2자녀까지로 확대 적용하고 한글 띄어쓰기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등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3조에서는 현실에 맞지 않는 ‘장학금의 지급대상’을 중고등학생에서 고등학생 및 대학생 자녀로 확대 적용하고 지급대상 자녀수도 1인 1자녀에서 1인 2자녀로 하고자 함.

표1 개정안 주요내용

- 새마을장학금 지급 대상 안 제3조제1항

- 변경 전 : 중·고등학생
- 변경 후 : 고등학생 및 대학생

- 지급대상 자녀수 안 제3조제2항

- 변경 전 : 1인 1자녀
- 변경 후 : 1인 2자녀

- 자치단체 중 지급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한 경우

(서울)-종로, 용산, 성동, 영등포, 강동구 등 5개 자치구

(기타)-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강원도,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계룡시, 고성군, 금산군, 김해시, 거창군, 남해군,
 논산시, 대구광역시 남구, 밀양시, 아산시, 홍성군 등

- 지급범위가 2자녀 혹은 제한 없는 경우
 : 관악구(2자녀), 강서구(규정 없음)

○ 안 제7조에서는 장학금 지급금액을 공납금 전액에서 수업료로 한정한다로 규정함.

표2 개정안 주요내용

- 장학금 지급금액 안 제7조
 - 변경 전 : 공납금 전액
 - 변경 후 : 수업료로 한정

- 지급대상이 대학생까지인 경우 장학금 지급 범위 (서울특별시 자치구)

자치구별	지급대상	지급금액 범위	비고
강동구	고등학생, 대학생	연간 공납금 전액, 예산 범위 내 조정 가능	
성동구	고등학생, 대학생	수업료로 한정, 예산 범위 내 조정 가능	
영등포구	고등학생, 대학생	고등학생=공납금 전액, 대학생=고등학교 공납금의 120%	
용산구	고등학생, 대학생	둘 다 고등학교 공납금 범위 내, 조정 가능	
종로구	고등학생, 대학생	공납금 전액, 예산 범위 내 조정 가능	

- 고등학교 등록금이 2021년 이후 의무교육으로 시행됨에 따라
 대학교 수업료 기준으로 용어를 정리

○ 우리 구 최근 3년간 장학금 지급현황

(단위 : 원)

구분	예산액	지급인원	지급총액	1인당평균금액
2019년	37,464,000	2명	2,737,000	1,368,500
2018년	37,064,000	12명	21,668,000	1,805,660
2017년	37,064,000	20명	35,935,000	1,796,750

- 새마을지도자의 고령화에 따라 장학금 지급 대상인 중·고등학생인 자녀수가 2017년 20명에서 2018년에는 12명 2019년에는 2명으로 감소되었음.

다. 개정안 검토결과

○ 본 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새마을장학금 지급 적용대상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중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로 규정되어 있으나 새마을지도자가 고령화 되어 있는 현실과 부합되지 않아 성동구, 영등포구, 용산구, 강동구, 종로구 및 강원도,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등에서 대학생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음.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새마을

지도자 대학생 자녀의 장학금 지급은 시대적 흐름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 관련 부서에서는 장학금 지급 대상 확대와 관련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장학금 지급 방안 모색을 통하여 향후 보다 합리적인 장학금 운용이 가능토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붙임 : 관련 법령 1부.

지방자치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4. 6., 2007. 5. 17., 2009. 12. 29., 2011. 7. 14., 2017. 4. 18., 2018. 12. 24.>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 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
 - 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
 -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소류지(小溜池)·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개수(改修)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카. 도립공원·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타.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 파.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등록·보존 및 관리
 -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